

대한카누연맹 인사위원회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카누연맹(이하 '본 연맹'이라 한다)처무규정 제5조에 의거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조직) ① 본위원회는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자로 구성한다.

③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기능) ①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

②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

③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
④ 인사관리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
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

⑥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

제5조 (운영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2.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3.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, 의결한다.

4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때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5. 결의사항은 회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확정된다.

제6조 (진술권 부여) 위원회의 의안에 관계되는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7조 (조사)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또는 경 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 (이중포상 및 징계금지) 동일한 공적 및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포상 및 징계를 거듭하지 아니 한다.

제9조 (의결정족수) 1.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.
2. 표결은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비밀 엄수) 위원회 회의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장 인사

본 연맹 처무규정 제2장을 적용한다.

제3장 포상

제11조 (포상권자) 직원에 대한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행사한다.

제12조 (포상종류)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.

제13조 (포상사유) 본 연맹은 공적이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상한다.

제14조 (포상 대상자 추천) 위원장은 공적조서(별지#1호)를 작성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제15조 (근속표창) ① 근속 표창은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근속 10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실시하며 근속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.
② 근속기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징계

제16조 (징계권) 직원에 대한 징계는 위원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.

제17조 (징계종류)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견책 ② 감봉 ③ 정직 ④ 면직

제18조 (징계사유)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.

1. 본연맹의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대만한때
2. 본연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
3. 본연맹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직원을 선동하고 규율을 문란케한 자
4. 기타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

제19조 (재심)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②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징계처분보다 가중할 수 없다. 다만,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최초 처분일에 소급한다.
- ④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처분이 취소되고 감봉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최초 처분일로부터 재심 처분일까지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20조 (징계요구)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비위사실이 중대 또는 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직접 위원회에 징계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.

제21조 (징계심의) ① 직원을 징계하고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비위 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를 기초로 징계를 심의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비위자 본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해 서면 진술서 제출이나 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비위 혐의자의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.

제22조 (징계의결기한) 징계는 징계 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징계심의 종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23조 (집행) ① 회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경감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

- ② 회장은 징계 대상자에게 위원회 심의 내용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에 부의하여야 한다.
- ③ 징계처분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징계처분장(별지#2호)의 교부와 동시에 인사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시행된다.

부칙

- ①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시행한다. (1999. 4. 28)
- ②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4. 4. 20)
- ③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10. 6. 23)
- ④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21. 5. 20)